

 <b>한국소비자원</b>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b>이 자료는 10월 17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16일(화) 12시]</b>			
<b>배포일</b>	2018년 10월 15일(월) (총 9쪽)	<b>담당부서</b>  <b>담당자</b>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김병법 팀장 (043-880-5831) 채희영 대리 (043-880-5833)

##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르게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시급해 -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체격이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영유아를 좌석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용품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어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 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그러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 □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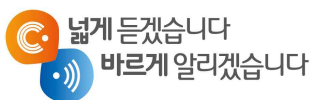
실제로 조사대상 100명에게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26명에 불과해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는 신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안전벨트 보조 안전용품인 카시트 및 부스터 시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성장단계에 따라 **뒤보기 카시트→앞보기 카시트→부스터 시트→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별첨 참조).

## □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관련 서비스 개선 필요해

한편,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이 필요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http://www.kca.go.kr)



## < 붙임 >

### 1 일반현황

#### □ 카시트 정의 및 기능

- (정의) 카시트는 체격이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영유아를 앉히거나 누워서 좌석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용품으로, 관련 법규에서는 카시트를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에서는 유아보호용 장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준 부속서3」에서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Child restraint systems)’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일반 소비자들이 ‘카시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미국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Car Seat’가 공식 명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용 카시트(약칭 카시트)’로 통일하여 표현하기로 함.
- (기능) 카시트는 자동차의 충돌 또는 예기치 못한 감속 발생 시 영유아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여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함.
  - 체격이 작은 영유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생명·신체 보호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웨빙\*이 어깨가 아닌 목 부분에 걸려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
    - \* 합성섬유 재질의 띠로, 탑승자의 신체를 구속하고 충격에너지를 흡수

#### □ 카시트 안전성 및 착용률

- (국내시험) 2015년 교통안전공단<sup>1)</sup>이 카시트의 어린이 보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충돌시험<sup>1)</sup> 결과, 카시트 착용 시 사망가능성이 18%인데 비해 카시트 미착용 시에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가 앞좌석과 충돌해 머리·흉부에 심한 충격을 받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국외연구) 국외연구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남.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만3세 미만 영아는 71%, 만3~12세 어린이는 54%의 사망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힘.
  - 호주 왕립 자동차클럽(Royal Auto Club)은 만4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시 사망률이 10배로 증가하고, 소비자가 이용 중인 카시트 중 14%는 교통사고 시 전혀 보호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발표함.

1) 시험조건 : 승용차(기아자동차 쏘울)가 56km/h로 주행하다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면충돌

- (착용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 60.4%<sup>2)</sup>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교통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교통안전 관련 소비자인식 개선 및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상향에 따라 카시트 착용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2016년 일반도로 41.7%, 고속도로 40.4%에 비해 대폭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함.
- \*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160조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부과

## □ 카시트 중요 장착수칙

- (제1수칙) 카시트는 차량 뒷좌석에 장착해야 함.
  - 3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된 좌우측 뒷좌석은 모두 장착 가능함.
  - 차량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전개되는 에어백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아 영유아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2인승 차량을 운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에어백을 해제하고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민 후 카시트를 장착하여야 함.
- (제2수칙) 카시트는 장착방법에 맞게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해야 함.
  - 느슨하게 고정된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심하게 움직여 영유아에게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음.
- (제3수칙)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해야 함.
  - 뒤보기는 앞보기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음.
- (제4수칙) 등받이를 충분히(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눕혀서 장착해야 함.
  -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야 영유아의 머리가 앞으로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 곤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제5수칙) 카시트의 머리지지대(헤드레스트; headrest)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함.
  - 머리지지대가 영유아 신체에 비해 낮은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머리 및 목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함.

2) 교통안전공단, 「2017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전국 거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소비자 100명의 차량에 설치된 카시트
- (조사방법) 자체 설문조사, 면접조사 및 육안조사
- (조사항목) 카시트 장착실태 및 이용실태

## □ 카시트 장착실태

- (현장점검) 조사대상 100명 중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잘못 장착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착좌석) 조사대상 100개 카시트의 장착좌석은 '뒷좌석(좌우측)'이 94개(94.0%)\*로 대다수였고, 조수석 5개(5.0%), 뒷좌석(중앙) 1개(1.0%) 순이었음.
    - \* '뒷좌석(좌측)' 61개, '뒷좌석(우측)' 33개
  - (장착강도) 조사대상 100개 중 92개(92.0%) 카시트는 좌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으나, 나머지 8개(8.0%)\*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음.
    - \* '고정이 느슨함' 5개, '고정끈을 체결하지 않음' 2개, '카시트를 단순히 좌석에 올려놓음' 1개
  - (장착방향) 조사대상 100개 중 98개(98.0%) 카시트는 영유아의 성장단계에 맞는 방향으로 장착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2개(2.0%)는 영아가 만1세 미만임에도 앞보기로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었음.
  - (등받이 각도) 조사대상 100개 중 94개(94.0%) 카시트는 적절한 등받이 각도로 장착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6개(6.0%)는 등받이 각도가 부적절했음.
  - (머리지지대) 조사대상 100개 중 1개(1.0%) 카시트는 머리지지대의 높이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이 우려됐음.

[단위 : 개, (%)]

장착수칙	준수	미준수
적절한 장착좌석을 선택할 것	94 (94.0)	6 (6.0)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92 (92.0)	8 (8.0)
영유아 연령에 맞는 장착방향을 선택할 것	98 (98.0)	2 (2.0)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할 것	94 (94.0)	6 (6.0)
머리지지대 높이를 적절히 조절할 것	99 (99.0)	1 (1.0)

- (소비자인식) 조사대상 100명 중 38명은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음.

(단위 : 명)

소비자인식	답변자수	
	예	아니오
카시트는 자가용의 어느 좌석에 장착해도 무방하다	17	83
카시트는 반드시 좌석에 고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5	95
카시트의 장착방향은 앞보기이든 뒤보기이든 무방하다	21	79
카시트 등받이는 눕히든 세우든 무방하다	24	76
카시트가 자녀의 신체 전부를 포섭할 필요는 없다	5	95

※ 5개 문항 모두 '아니오'가 정답

- (잘못된 이용경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실제로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함.

(단위 : 명)

이용경험	답변자수	
	예	아니오
자가용 조수석에 카시트가 장착된 상태로 자가용을 운행한 적이 있다	26	74
자가용 좌석에 카시트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자가용을 운행한 적이 있다	11	89
자녀가 만1세 미만일 때 카시트를 앞보기로 장착하고 자가용을 운행한 적이 있다	21	79
카시트 등받이를 충분히 눕히지 않은 상태로 자가용을 운행한 적이 있다	19	81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머리가 머리지지대 밖으로 튀어나온 적이 있다	9	91

※ 5개 문항 모두 '아니오'가 장착수칙 준수

- 카시트를 잘못 이용한 경험이 있는 47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자녀를 보다 쉽게 돌보기 위한 등 개인적 사정으로' 23명(48.9%), '잘 몰라서(카시트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14명(29.8%), '잘못 알고 있어서(카시트 관련 지식이 잘못되어서)' 7명(14.9%), '단순한 부주의로' 3명(6.4%)의 순이었음.

## □ 카시트 이용실태

- (이용빈도)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자녀를 카시트에 착석시키는지에 대해 5단계 빈도(① 전혀 없음(0%) - ② 가끔(25% 내외) - ③ 때때로(50% 내외) - ④ 거의 항상(75% 내외) - ⑤ 항상(100%))로 질의한 결과,
- 조사대상 100명 중 26명(26.0%)만이 자녀를 카시트에 항상 착석시키고 있었고, 나머지 74명(74.0%)은 경우에 따라 착석시키지 않고 있었음.

[단위 : 명, (%)]

카시트 이용빈도	답변자수 (구성비)
① 전혀 없음(0%)	1 (1.0)
② 가끔(25% 내외)	4 (4.0)
③ 때때로(50% 내외)	10 (10.0)
④ 거의 항상(75% 내외)	59 (59.0)
⑤ 항상(100%)	26 (26.0)
합계	100 (100.0)

- 자녀를 카시트에 착석시키지 않은 경험이 있는 74명은 그 이유(복수선택)를 '목적지가 가까워서'(38명),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38명),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13명), '자가용이 여럿인데 모든 차량에 장착하지 못해서(옮겨 장착하지 못해서)'(13명), '자녀에게 수유하기 위해'(4명) 등으로 밝힘.

(단위 : 명)

카시트 미착용 이유	답변자수
목적지가 가까워서	38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	38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	13
자가용이 여럿인데 모든 차량에 장착하지 못해서 (옮겨 장착하지 못해서)	13
자녀에게 수유하기 위해	4
기타*	1

\* 차량의 정원이 초과하여 카시트를 장착할 여유 공간이 없어서



- (개요) 영유아는 출생 후 신체가 충분히 성장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보조하는 안전용품인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도움을 받아야 함.
  - \* 어린이의 앉은 키를 높여 안전벨트의 웨빙이 신체를 적절히 구속하도록 보조하는 용품
- 영유아는 성장단계에 따라 뒤보기 카시트→앞보기 카시트→부스터시트→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됨.
- 성장단계가 낮은 영유아가 사용하는 용품일수록 높은 점식을 적용하고 있어 카시트는 6점식·5점식·3점식, 부스터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는 3점식·2점식을 채택하고 있음.
  - 카시트는 다양한 점식(6점식·5점식·3점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카시트의 구성부분들이 안전벨트의 웨빙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식에 따른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임.
- (뒤보기) 체중에서 머리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영아일수록 차량 급정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머리·경추·척추 등을 보호하기 위해 카시트를 뒤보기로 장착해야 함.
  - 카시트를 뒤보기로 장착할 경우 영아의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거나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시트 등받이 각도를 충분히 확보(예각 기준 45° 미만)할 필요가 있음.
  - 만1세 미만의 영아는 반드시 뒤보기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만3세 미만까지도 뒤보기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앞보기) 만1세 이상의 영유아는 앞보기 카시트를 착용할 수 있으나, 카시트 제품의 신장·체중 한계 내라면 뒤보기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카시트를 앞보기로 장착할 경우 머리를 바로 세울 힘이 부족한 영유아의 머리가 앞이나 옆으로 떨어지거나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카시트 등받이 각도를 충분히 확보(예각 기준 75° 미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유아가 만7세 미만이고 카시트 제품의 신장·체중 한계 내라면 앞보기 카시트를 계속 착용할 수 있음.

3)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권고하는 내용을 재정리



- (부스터시트 및 안전벨트) 만4세 이상의 유아는 차량 안전벨트의 웨빙이 신체를 적절히 구속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부스터시트를 착용할 수 있고, 신체가 충분히 성장한 만8세 이상의 어린이는 부스터시트의 도움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음.

[ 카시트(뒤보기·앞보기), 부스터시트, 안전벨트 비교 ]

구분	카시트		부스터시트	안전벨트
	뒤보기	앞보기		
성장단계	출생~만2세	만2~6세	만4~11세	만8세 이상
점식	6점식·5점식·3점식		3점식	3점식·2점식
장착각도	예각 기준 45° 미만	예각 기준 75° 미만	상관없음	상관없음

[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른 안전벨트 착용방법 ]

